

조사료 증산 및 부존자원이용 확대

1) 사료 수급

① 기본방향

△ 조사료증산 및 부존사료자원의 개발이용 확대
△ 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 △ 사료비 부담경감 및
배합사료의 국제경쟁력 제고 △ 배합사료의 가격안
정 및 품질향상에 있다.

② 추진계획

조사료증산 및 부존사료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
여 개량목초를 다음과 같이 이용하여 벧짚암모니아
처리하는 6만5천기로 확대하며 국내산 원료중 옥수수
4만6천%, 대두 1만 기타 국내사료 원료를 사용한
다.

또 사료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배합사료원
료의 수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사료원료의
다양화와 수입선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
내적정 제고수준유지등을 실시한다.

사료비 부담경감 및 배합사료의 국제경쟁력을 강
화하기위해 유통단계를 단축하며 농가적정거래의 확
대를 유도하고 원료배합비율전산화 등 경영합리화를
유도 및 생산품목의 전문화를 유도한다.

배합사료가격 안정 및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의 배합사료 시장점유율제고로 가격억제 및 조절
기능을 강화하며 국제곡물가격 정보체계강화 및 적
시 구매 비축을 유도하고 건전한 시장경쟁체제 유도
로 유통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사료검사를 강화한
다.

2) 초지조성 사업

① 목 적

국토이용효율제고와 산지초지 개발로 소 사육기반
을 조성하며 축산경영의 합리화로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는데 있다.

② 기본방침

실수요자 및 성공위주로 개발을 추진하며 자력조
성은 지원면적에 관계없이 허가하고 소입식사업은
농가자력으로 추진하고 초지조성 관리 및 이용기술
의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③ 사업계획

사업주관은 도지사가 기술지도 및 교육은 농진청 및
축협중앙회, 자재공급은 축협중앙회가 제공하며 용

자조건은 5년거치 5년균분상환에 년리8%이며 사업 목표량은 2,665ha이다.

④ 추진요령

대상지및 대상자는 일반초지의 경우 조성허가면적이 1ha이상이 돼야하며 소사육시설이 2km이내에 위치해야하며 국공유지 개발은 해당 시·군에 거주하여 직접 조성할 사람에게 허가하며 고속도로변과 그린벨트내의 사유지초지조성은 허가한다.

자력초지 조성은 계획면적에 제한없이 허가하되 정부지원은 일체없다.

보조금과 융자금의 교부는 ha당 초지조성비의 지원한도는 농림수산부가 고시한 89초지조성단비의 보조 및 융자비율기준에 의한다.

초지조성면적에 목도면적은 포함하되 진입도로, 축사, 부대시설면적은 제외한다.

3) 기성초지 보완사업

① 목 적

성실한 초지관리 및 초생경신으로 우량 초지화하며 초지생산성 향상으로 축산경영을 개선함에 있다.

② 방 침

하급초지우선으로 자력보완실시하며 단지초지 및 시범초지의 경영을 개선하고 초지관리 및 이용기술 교육을 강화한다.

③ 실시요령

기성초지의 보완에 필요한 가축입식 잡관목 제거, 시비·보파등은 자력으로 추진하되 보완시에는 하급초지를 우선으로 실시한다.

초지지목변경은 초지조성 허가조건으로 하여 조성 완료와 동시에 목장용지로 변경토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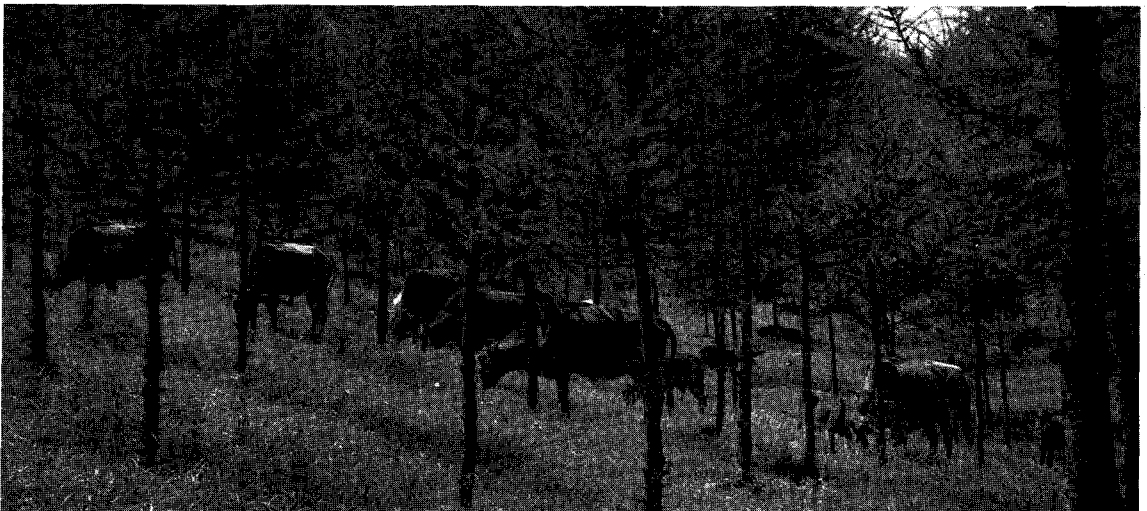
4) 초지농가 축사시설 지원사업

① 목 적

초지조성농가에 축사시설비 지원으로 농가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며 초지와 축사시설은 연계하여 초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경영의 조기 정착으로 안정된 축산기반을 조성함에 있다.

② 사업계획

사업주관은 도지사가 실시하고 기술지도는 축협중앙회가 한다.



지원대상은 축협시범초지와 신규 및 기생초지농가 중 희망농가에 한하여 5년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으로 연리 8%에 지원하며 1,200평의 면적에 2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③ 추진요령

축사는 가급적 초지내에 시설하도록 하고 융자금은 사업실적 확인후 초지조성융자금 집행요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5) 청예사료작물 재배사업

① 목 적

양질조사료의 증산이용으로 농후사료 절감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며 사료작물의 작부체계 개선으로 단위당 생산성을 제고하며 엔실리지용 옥수수의 재배확대로 월동조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다.

② 방 침

조사료 생산기반이 부족한 소다두사육농가중심으로 자력재배를 권장하며 국산우량종자를 최대한 공급하며 사료작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농가기술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한다.

③ 사업계획

도지사가 주관하여 농진청과 축협중앙회가 기술을 지도하며 9개소에 총 13만5천ha를 재배하며 재배작물은 옥수수, 수수, 수단그라스, 연맥, 피, 유채등이다.

④ 추진요령

시장군수는 작물의 특수성과 작부체계 작물별 재배, 이용기술, 조사료이용의 중요성 및 행정지도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3월30일 이전에 실시한다.

6)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

① 목 적

겨울철 노는 논과 밭을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생산

이용과 조사료의 자급도제고로 축산경영합리화 및 농가소득증대의 도모에 있다.

② 방 침

읍·면 및 축협단위 시범초지조성으로 재배기술연습, 임대및 계약재배를 권장하고 소·다두사육농가 중심으로 부락주변에 집단재배를 유도하며 다수확종자를 최대한 보급하고 호맥종자의 채종사업을 확대한다.

③ 사업계획

도지사가 주관하여 전국 9개시도에서 89.1.1~90.6.30까지 총 63468ha를 실시한다.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지방비	축진기금	자 담
국비사업	ha	3,				
	53,468	3,636	727	727	-	2,182
		(100%)	(20%)	(20%)		(60%)
기금사업	10,000	680	-	-	272	408
		(100%)			(40%)	(60%)
계	63,468	4,316	727	727	272	2,590

주 : 1) ha당 종자대 : 170kg×400원=68,000

2) 자력사업은 시도별 계획으로 시행

3) 시도별 내역은 별표 참조

○ 재배작목 : 호밀, 보리,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밀, 자운영등 추파후 이듬해에 수확 이용하는 기타 작목은 자력사업으로 재배)

7) 사료작물 예취기 지원사업

① 목 적

조사료생산의 기계작업에 의한 성력화로 조사료생산 의욕을 고취하며 인력난해소와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경영을 개선하는데 있다.

② 방 침

도지사 책임하에 세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대

상자를 엄선하고 기계활용도 제고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한다.

③ 사업계획

도지사가 주관하여 실시하며 용자조건은 3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에 년리8%로 축산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사업목표량 및 사업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사업량	대								
	10	14	13	22	7	2	7	25	100
사업비	천원								
	4,500	6,300	5,800	9,900	3,150	900	3,150	11,250	45,000

④ 추진요령

대상자 선정은 시장·군수가 지역축협조합장과 협의하여 가급적 읍·면 또는 축협시범 초지중심으로 경운기 보유농가중에서 구입희망자를 선정한다.

예취기의 종류는 경운기 부착용을 기본기종으로 하여 용자한도액(대당:45만원)범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용자지원한다.

8) 볏짚암모니아처리 사업

① 목적

부존사료자원인 볏짚, 보리짚등에 암모니아를 처리하여 사료적 가치를 증진함으로써 국내조사료자원 이용확대와 배합사료의 사용량 감소로 축우사육농가의 사급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는데 있다.

② 사업량

65,000기를 처리하여 암모니아처리 볏짚을 19만5천톤을 생산한다.

③ 추진계획

구분	사업량	단가	금액			비고
			보조	자담	계	
	천기	천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축진기금보조:

지원액	65	53	1,820	1,625	3,445	게스 및 주입비중 일부 자담: 암모니아 게스 및 주입비 일부와 비닐 대
-----	----	----	-------	-------	-------	---

(주): 1. 암모니아게스비 및 주입비 소요액의 70%보조

2. 기당금액: (게스비: 27,000원, 주입비: 13,000원, 비닐비: 13,000원, 합계: 53,000원)

구분	사업기간	처리량	비고
1차	'89. 4 ~ 8월	10%	보리짚
2차	'89. 10 ~ 12월	70%	햇볕짚
3차	'90. 1 ~ 3월	20%	묵은볕짚

*지역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단계별 사업계획량 조정가능함.

소요자재는 암모니아게스가 6,500%가 필요하다.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농가선정은 시·도지사가 선정한다.

지원내용을 보면 암모니아게스비와 주입비의 70%는 축산진흥기금에서 보조하며 암모니아게스비와 주입비30%와 비닐비는 처리농가에서 부담한다.

대상농가는 축우사육농가로 암모니아처리를 위한 원료를 확보하고 처리비의 일부와 비닐비를 자부담하는 농가로 한우는 30두, 유우는 20두 이내 사육농가에서 시도별로배정된 사업량 범위내에서 처리시기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1농가당 4기까지를 원칙으로하고 보리짚등 부존자원이용농가는 1기를 추가처리할 수 있다.